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734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7347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2333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혜민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2333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1. 7.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피고는, C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차전22056호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 채무자인 D과 E이 매달 원고에게 채무를 갚고 있다고 말하여 그 채무를 자신이 추심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전혀 몰랐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고, 피고 역시 2016년경 망인으로부터 즉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지 않은 채 관련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면서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 받지 않은 것은 악의가 전혀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반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김경진, 판사 김용태

별지